



제 목 |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해놓고,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 방식은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며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증거자료의 수집능력 부족, 질병원인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소견 조회,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를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준 및 제외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월 80시간미만 이라는 말도 있고 신청일로부터 소급 1년 6개월안에 180일 이상 근무자가 가입대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 어렵네요

1.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가입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몇 시간인지와 월 몇 일인지, 금액은 얼마이상 인지요?
2.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고용보험법 제2조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그날의 근로내역신고가 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산재보험료 산정 시 반납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여금 등의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료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요?

⇒ 근로자가 임금을 전액수령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반납하는 경우나 임금지급 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진 임금)중 일부를 반납(포기 등)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하는 경우 등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반납하는 경우라도 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반납된 임금, 상여금 등은 재해 보상에 있어서도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산



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목 |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5년 전에 산재사고를 당하여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실상태가 오래 방치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서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보험급여의 청구로 중단되며,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처분 등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요양급여 등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시효가 중단될 때에는 그 효력이 같은 재해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업장 신고관련 질의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감리용역업체 직원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9,902억원이며 안전관리자는 14명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업장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9,902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14명)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인 경우 원청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 관할 노동관서에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